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4호로 2023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부 및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자부담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다. 목적물 및 지원대상·내용(안 제4조~제6조)
- 라. 보험금 지급방법 등(안 제7조)
- 마. 가입 홍보 및 촉진(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풍수해보험법」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0. 5.~ 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정부 및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자부담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보험목적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

- 되는 동산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세입자와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풍수해보험 모집인으로 통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2022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문래동 상가가 침수되는 등 사전적인 풍수해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모집인 선정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풍수해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 7 (생략)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